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합56014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이상화

피 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구민승, 김시내, 박준기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54,534.92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러시아 기업인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6. 8. 26.경 D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하는 컨소시엄이 수주한 E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전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30.경 D으로부터 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1. D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설립되면서 이 사건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경우 인적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발행

1) 피고는 2016. 12. 14.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하여 수익자를 원고로, 유효기간을 2019. 3. 30.까지로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적시한 최초의 청구서를 접수하면 취소불능으로 그리고 조건없이 미화 269,421.20달러¹⁾ (위 보증금액은 이후 276,831.20달러로 최종 증액되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이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하여 수익자를 원고로, 유효기간 2019. 3. 30.까지로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적시한 최초의 청구서를 접수하면 취소불능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미화 97,763.4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이행보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이행보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서'라고 하며, 이 사건 이행보증서에 의한 보증을 '이 사건 이행보증'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변압기 인도기일의 연기 및 원고의 SDN 지정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전력변압기와 배전변압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변압기'라고 한다)의 출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7. 12.

4.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력변압기를 2018. 2. 28.까지, 배전변압기를 2018. 10. 31.까지 보관하다가 각 보관기일 이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변압기의 인도기일이 연기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 26.경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법률'(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이하 'CAATSA'라고 한다) 제228조에 따라 제정된 '우크라이나의 주권, 통합, 민주 및 경제적 안정의 지원에 관한 법률'(Support for the Sovereignty, Integrity, Democracy, and Economic Stability of Ukraine Act of 2014, 이하 'UFSA'라고 한다)'에 근거한 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이하 'SDN'이라고 한다) 명단에 등재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 청구

1)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만료일 이전인 2019. 2.경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이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SDN 등재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9. 3. 28.경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제5조를 위반하여 이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연장하지 않았고, 인도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이행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256,771.52달러와 이 사건 제2이행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97,763.4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1 내지 3, 4 내지 6,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보증은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으로, 이러한 은행보증의 보증인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이행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합계 354,534.92달러(= 256,771.52달러 + 97,763.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변압기 인도기일이 연기되던 중 원고가 SDN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의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연장 청구 등에 응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서에 의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등 참조).

2)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 이러한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이 은행보증은 수익자와 보증의뢰인과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된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가진다.

그러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이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이행보증의 성격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인 원고가 보증의뢰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은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판단

1)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연장 의무 위반 책임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이 2019. 3. 30.까지인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인 2019. 3. 30.까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한 보증을 제공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이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거나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변압기의 인도기일이 연기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변압기의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요청으로 연기된 인도기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2018. 1. 26.경 원고가 SDN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6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새로운 이행보증서를 발행받아 주거나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SDN으로 지정된 원고와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원고의 중요한 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UFSA 제10조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미국 내 자산에 관한 거래가 동결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되거나, 미국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별도의 경제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미국 및 미국 달러화가 세계 경제 및 국제거래에서 갖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미국 내 자산에 관한 거래가 동결되는 등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입게 될 피해는 매우 극심한 반면, 새로운 이행보증서의 발행 또는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SDN으로 지정된 것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러시아의 크롬반도 점령 이후 크롬반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크롬반도에서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을나 제11호증), 원고가 SDN으로 지정된 것에 원고 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행보증서 발행 또는 이 사건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이행지체 책임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지체가 인도기일 연장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인도기일 연장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지체가 인도기일 연장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SDN으로 지정된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지급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보증의뢰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원고 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SDN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므로, SDN으로 지정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에 의한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권리남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보증인인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의 보증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구세희 판사 이종욱

1)이하 달라는 미화를 가리킨다.